

회수 완료 보고서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았거나 공시사업자 회수결정 공시제품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회수 공시품 내역	회수 공시제품명	
	공시번호	
	생산일자(유통기한)	
	공시사업자명 및 소재지	
회수내역 (kg)	생산량	
	출고량	
	회수계획량	
	회수량	
	미회수량	

◦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

◦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

◦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

- 주요 내용

- 완료 예정일

년 월 일

보 고 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(지원장, 사무소장), 공시기관의 장 귀하